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86호

定　　　　款

仁川水産業協同組合

定　款

제정 1962. 4. 1
개정 1967. 8. 25 수산청고시 제10호
1972. 1. 21 수산청고시 제10호
1972. 6. 7 수산청고시 제12호
1972. 11. 8 수산청고시 제20호
1974. 5. 9 수산청고시 제8호
1975. 4. 15 수산청고시 제7호
1977. 12. 15 경기 제7호
1978. 12. 2 경기 제78-8호
1979. 10. 26 경기 제79-16호
1980. 4. 29 경기 제80-1호
1982. 4. 1 인천 제1호
1983. 6. 27 인천 제83-2호
1984. 12. 19 인천 제84-1호
1985. 11. 22 인천 제85-1호
1987. 11. 2 인천 제87-2호
1988. 12. 10 인천 제88-1호
1990. 3. 21 수산청 인가 제90-19호
1991. 11. 21 수산청 고시 제20호
1993. 2. 5 수산청 고시 제92-1호, 제92-16호
1995. 6. 23 수산청 고시 제95-15호
1995. 10. 4 수산청 인가 제95-33호
1996. 12. 13 해양수산부 고시 제96 -15호, 제96-16호
1998. 12.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98 -90호
2000. 7.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39호
2001. 2. 15 해양수산부 인가 제2001-5호
2001. 3. 2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8호
2001. 5. 2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34호
2005. 7.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35호
2006. 12. 1 해양수산부 인가 제2006-3호
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1호
2010. 10. 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0호
2011. 11. 2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55호
2012. 4. 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43호
2014. 11.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5호(2013.5.7)
2014. 11.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2호(2014.6.13)
2014. 11.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15호(2014.11.5)
2015. 9. 3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15호(2015.8.4)
2017. 3.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86호(2016.12.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개정 2005.7.1>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3조(구역) 이 조합의 구역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일원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서구 검단동은 제외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에 둔다.<개정 2017.03.08>

② 이 조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교육·지원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개정 2017.03.08>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라.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업무 추진 <개정 2010.11.24>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개정 2017.03.08>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소득증대사업 <개정 2017.03.08>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10.11.24>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개정 2010.11.24>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개정 2010.11.24>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업무 <개정 2017.03.08>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개정 2010.11.24>
   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개정 2010.11.24>
   나. 장제사업(葬祭事業)<개정 2017.03.08>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개정 2017.03.08>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개정 2010.11.24, 2017.03.08>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1.24>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개정 2010.11.24>
13. 차관사업(借款事業)<개정 2017.03.08>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24>
15. 그 밖에 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정 2010.11.24>

② 이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수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지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교부율에 따른 위탁판매조성금을 책정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다른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수산물 위탁판매액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2017.03.08>

1. 연간 총위판액(비조합원의 위판액을 포함한 이 조합의 연간 총위판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미만 : 예산의 범위
2. 연간 총위판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000분의 15
3. 연간 총위판액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0,000분의 30
4. 연간 총위판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00분의 45
5. 연간 총위판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0분의 60
6. 연간 총위판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0,000분의 75
7. 연간 총위판액 500억원 이상 : 10,000분의 90

③ 이 조합의 연간 총위판액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연간 총위탁액(위판조성금 지급대상이 되는 조합의 조합원이 이 조합과 다른 조합에 위판한 연간 총위탁액을 말한다) 500억원 이상의 조합에 위판조성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율을 10,000분의 60으로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제6조(사업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이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0.7.1>

② 이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0.7.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0.7.1>

제7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① 이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 법인의 실태조서, 이 조합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과 범위,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면을 첨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제8조(공고방법)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공고는 지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② 이 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제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이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이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10조(규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1.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0.11.24>
3.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1.24>
4. <삭제 2010.11.24>
5. <삭제 2010.11.24>
6. <삭제 2010.11.24>
7. <삭제 2010.11.24>
8. <삭제 2010.11.24>

② 이 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회장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다만, 회장과 협의하여 예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11조(어촌계)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2005.7.1>

② 조합장은 「수협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어촌계를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10.11.24>

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직무정지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정직·감봉 또는 견책.

④ 어촌계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⑤ 조합장은 어촌계의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9. 3>

제2장 조 합 원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7.19, 2010.11.24>

1.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개정 2015. 9. 3>
2.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 교습어업
<개정 2007.11.22, 2015. 9 .3>
3.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 <개정 2007.11.22, 2015. 9 .3>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개정 2007.11.22, 2015. 9 .3>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0.11.24>

③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11.22> <개정 2010.11.24>

제13조(준조합원) ① 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관련단체 <개정 2005.7.1, 2010.11.24>
2. 이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11.24, 2017.03.08>
3. 이 조합의 구역 외에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중에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5.7.1, 2010.11.24, 2017.03.08>

② 이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합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준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④ 준조합원은 이 조합이 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탈퇴 시 가입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7.1, 2010.11.24>
⑤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이사회"는 "조합장"으로, 제14조제3항의 "출자금"은 "가입금"으로, 제27조제4항의 "지분"은 "가입금"으로 본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14조(가입) ①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 조합 가입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확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어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 조합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삭제 2010.11.24>
2. 어업허가증 사본 <개정 2010.11.24>
3.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개정 2010.11.24>
4. 어업종사자증명서 <개정 2010.11.24>
5. 등기 또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0.11.24>

② 이 조합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5.7.1>
③ 가입신청자는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이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조합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어업종사자증명서는 가입신청자의 주소를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주소를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조합에서 직접 조사하여 조합장이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第1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7.1>
②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7.1>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제3호나목,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2017.03.08>

第16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0.11.24,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31, 2010.11.24, 2014.11.28>

第17조(조합원의 신고의무)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18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 개최 시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4.11.28>

第19조(출자) ① 조합원은 15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2010.11.24>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③ 조합원 1인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평균출자좌수의 5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10, 2010.11.24>

第19조의2(우선출자) ① 이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 조합에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신설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11.24>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24>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24>
⑥ 이 조합이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0.11.24>
⑦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우선출자자에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11.24>
⑨ 그 밖에 우선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11.24>

제20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조합원 가입신청자는 인수하기로 한 출자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이 조합은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원으로 하여금 특별증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7.1>
③ 제2항의 특별증자를 의결한 때에는 조합장은 출자의 규모 및 방법, 납입시기 등을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 <개정 2010.11.24>
④ 조합원(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개정 2010.11.24>
⑤ 조합원(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로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1.24>

제20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 조합원은 제76조제6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2.4.13>

②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신설 2012.4.13>

제21조(출자증권의 발급) 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가입신청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제22조(경비의 부과) ① 이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7.1, 2010.11.24>
② 제1항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0.7.1>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경비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24>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00.7.1, 2010.11.24>

제24조(과태금)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경비·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만분의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7.1>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과태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2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개정 2005.7.1, 2010.11.24>
2. 사망한 경우 <개정 2010.11.24>
3. 파산한 경우 <개정 2010.11.24>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0.11.24>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설 2000.7.1> <개정 2010.11.24>

③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 <개정 2010.11.24, 2011.11.21>

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⑤ 조합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第26조(제명)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1. 1년 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1.24>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이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5.7.1, 2010.11.24>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개정 2005.7.1, 2010.11.24>
4. <삭제 2010.11.24>

② 이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4>

第27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산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경우에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개정 2005. 7.1, 2010.11.24>
④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28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제29조(회전출자) ① 이 조합은 제76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회전출자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제19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신설 2017.03.08>

제30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5.7.1>
1. 납입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이를 산정한다. 그러나 그 재산이 납입출자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7.1>
2. 회전출자금에 상당하는 재산액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단서신설 2000.7.1>
3.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76조제5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7.1>

4.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5. 지분을 계산할 때 계산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출된 지분금액이 10원 미만인 것은 버린다. <개정 2010.11.24>

제 3 장 총회와 이사회

제31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이내에, 제4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 <개정 2010.11.24>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7.1>

第35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5.7.1, 2010.11.24>
2.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7.1>

第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第3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24>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개정 2005.7.1>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각 목 사항의 변경 <개정 2000.7.1, 2010.11.24>
   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총액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의 최고한도.
8.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개정 2005.7.1>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1>
   가. 조합원 및 불건전채권의 채무일부감면 <개정 2001.5.29>
   나. 제세공과금의 부담
   다. 상각채권(이자채권 포함)의 포기 <신설 2001.5.29>

10. 어업권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 2010.11.24>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
  나. 채권의 보전 및 행사와 관련된 행위
11.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
12. 우선출자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신설 2010.11.24>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24> <개정 2014.11.28>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이 조합과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38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24>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사람이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會期)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에서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41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使用人)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 2010.11.24>

제4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제44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45조(대의원회) ① 이 조합에 제4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를 “대의원회”로,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본다)하되,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0.11.24>

제46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①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개정 2010.11.24>
③ 대의원은 이 조합 및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11.24>
④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 수가 제47조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⑤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8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47조(대의원의 정수) ① 조합의 대의원의 정수는 40명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구역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및 어촌계를 선출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11.21, 2010.11.24>
② 선출구역별 대의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11.24>
③ 제2항의 조합원 수는 대의원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24>

제48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1.24>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개정 2010.11.24>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개정 2010.11.24>

제49조(이사회) ① 이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1.24>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이사회 개회 5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이사회소집통지서를 구성원과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4>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개정 2005.7.1>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차입금 최고한도 내에서의 차입계획 변경
5.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7.1> <개정 2010.11.24>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
   나. 채권의 보전 및 행사와 관련된 사항
6.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신설 2000.7.1>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변경 <개정 2005.7.1, 2010.11.24>

7의2.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4>

8. 법령, 정관 또는 규약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0.11.24>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신설 2001.5.29>
10.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이사의 남은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조합원 1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전대의 최고한도액
14.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금의 결정
15. <삭제 2017.03.08>
16. <삭제 2017.03.08>
1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사항 <개정 2005.7.1, 2010.11.24>

⑥ 조합장은 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⑦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0호의 경우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임이사의 남은 임기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⑧ 이사회는 제5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⑨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7.1>

⑩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7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10.11.24>

⑪ 이사회에 대하여는 법령,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를 "이사회"로, "조합원"을 "이사"로 본다.<개정 2010.11.24>

第50条(운영자문회의) ① 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인사 15명 이내로 운영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에 관한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조합장은 운영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0.7.1> <개정 2010.11.24>

④ 그 밖에 운영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24>

제4장 임원 및 간부직원

第51条(임원의 정수) 이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 경우 감사 중 1명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감사'라고 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2010.11.24, 2015.9.3>

1. 상임 조합장 1명 <개정 2010.11.24>
2. 상임이사 1명
3. 비상임이사 9명(조합원 이사 : 9명, 비조합원 이사 : 0명)
 <개정 2009.3.2, 2012.11.27, 2014.11.28>
4. 비상임감사 2명

제52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제2항의 규정 외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05.7.1, 2010.11.24>

1.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2.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개정 2010.11.24>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③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2014.11.28>

④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93조제3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24>

⑤ 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신설 2010.11.24>

⑥ 감사는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조합의 재산과 사업 진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7.1, 2010.11.24>

⑦ 감사는 이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4>

⑧ 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0.7.1, 2017.03.08>

⑨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⑩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 <개정 2010.11.24>

제53조(감사의 대표권) ① 이 조합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이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0.11.24>
② 이 조합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24>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다.<개정 2005.7.1, 2010.11.24>
② 조합장 외의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외부전문가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2015.9.3, 2017.03.08>
1.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 <개정 2010.11.24, 2017.03.08>
  가.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중앙회 및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외부전문가 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
<개정 2005.7.1, 2010.11.24, 2017.03.08>
  가. 중앙회, 수협은행,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은 제외한다.

나.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7.03.08>
4. <삭제 2017.03.08>

③ <삭제 2017.03.08>

④ 이 조합은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의 수가 선거공고일 현재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단서신설 2014. 11. 28> <개정 2015. 9. 3>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여성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여성조합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7. 03. 08>

⑥ 임원의 선출과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부속서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2015. 9. 3>

제54조의2(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03.08>

1. 상임이사
2.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
3. 수협법 제46조제8항단서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중 여성인 이사
4. 외부전문가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한다.

1. 조합장
2.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구역의 어촌계장 1명
3. 이사회가 위촉하는 비상임이사 2명
4. 조합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명

5. 이사회가 위촉하는 대의원 2명
③ 인사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결정 및 선정
2. 추천대상자 자격심사
3. 그 밖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인사추천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임원 선거에 추천하지 못한다.
⑦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第5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3호와 제18호는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0.11.24>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개정 2005.7.1>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6. 「수협법」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7. <삭 제 2010.11.24>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10. <삭 제 2010.11.24>
11. 「수협법」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2014.11.28>

12. 「수협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수협법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 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5.7.1, 2010.11.24, 2012.4.13, 2014.11.28>

13.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0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 조합의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1, 2010.11.24>

14. 선거일공고일 현재 「수협법」 제5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 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변상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며, 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5.7.1, 2010.11.24, 2017.03.08>

15. <삭제 2010.11.24>

16. <삭제 2010.11.24>

17. <삭제 2010.11.24>

18.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0.11.24>

○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위판실적을 제외한다)을 이용한 금액 : 1,500만원 이상 <신설 2010.11.24>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 이용에 따른 위판금액 : 10,000만원 이상
<신설 2010.11.24>

○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2,000만원 이상 <신설 2010.11.24>

○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2,000만원 이상 <신설 2010.11.24>

②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후 임기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3호, 제14호 및 제18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⑤ 이 조합의 임원은 재임중 형의 확정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제56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소관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2011.11.21>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03.08>
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2017.03.08>
④ 제3항 단서는 비상임이사의 일부 재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은 “재임 중인 다른 비상임이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궐위시점이 선거일 전인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궐위시점이 당선공고 후인 경우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의 궐위사유 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신설 2010.11.24, 2017.03.08>
⑥ <삭제 2017.03.08>
⑦ 임원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개정 2010.11.24>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시 사용한 표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 <개정 2005.7.1, 2010.11.24>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 이사회의 해임요구 및 총회에서의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3.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조합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따른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조합장은 「수협법」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상임이사가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협법」이나「수협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의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제58조(임·직원 겸직금지 등) ①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조합의 임원은 이 조합의 대의원, 직원 또는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11.24>

② 이 조합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은 중앙회의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10.11.24>

③「수협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이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하 “실질적 경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10.11.24>

④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조합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본인 예탁금 담보대출(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공제계약대출을 포함한다) 및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한다. <신설 2010.11.24> <개정 2017.03.08>

1. 신용사업 : 총 잔액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
2. 신용사업 외의 사업 : 거래 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⑤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취임 전에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조합의 임원, 대의원 및 직원의 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선된 임원의 직에 취임하는 때에 기존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며,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선된 임원의 직에 취임하기 전에 기존의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8>

제5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

제60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 조합의 임원은 「수협법」,「수협법」에 따른 명령·처분·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5.7.1, 2010.11.24>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개정 2005.7.1, 2010.11.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

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 또는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의원 대표가 행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⑦ 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지체 없이 임원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신원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⑧ <삭제 2010.11.24>

제61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1.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개정 2005.7.1, 2010.11.24, 2014.11.28>
2. 가입 연월일 <개정 2010.11.24, 2014.11.28>
3. <삭제 2014.11.28>
4. <삭제 2014.11.28>
5. <삭제 2014.11.28>
6. <삭제 2014.11.28>
7. <삭제 2014.11.28>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이 정한 수수료를 내고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1.24>

③ 조합원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실질적 경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11.24>

④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0.11.24>

제62조(직원의 임면) ① 이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직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는 해당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행하고,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7.1> <개정 2005.7.1, 2010.11.24>

③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과 상임이사 소관 이외의 사업부문간 직원의 인사교류는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행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제63조(간부직원) ①이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필요한 수의 상무를 둔다.
<개정 2000.7.1>

② 간부직원은 「수협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간부직원은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의 명칭·수 및 직무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집행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0.11.24>
③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1>
④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신설 2011.11.21>

제64조의2(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 이 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② 이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③ 이 조합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11.24>

제65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사업과 이에 부대 되는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조합원에게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7.1, 2010.11.24, 2017.03.08>

③비조합원에게 제5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회계연도 사업이용량(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03.0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24>

1.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제66조(경영평가 및 감사결과 이행조치) ① 이 조합은 「수협법」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라 회장이 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거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협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중앙회 직원을 이 조합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67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이 조합이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관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이 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이 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24>

④ 제3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갱신한다. <개정 2010.11.24>

제68조(어업의 경영)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합이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69조(어업권의 행사)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의 어업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조합은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6장 회 계

제70조(회계연도) 이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0.7.1>

제71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7.1>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 또는 특정자금의 운용 등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개정 2010.11.24>
④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24>

제72조(법정적립금) 이 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의 적립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제73조(이월금) ① 이 조합은 지도사업(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잉여금의 이월에 관하여는 제72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지도사업비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00.7.1>

제74조(임의적립금)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72조의 법정적립금과 제73조의 이월금을 공제하고도 남을 때에는 동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업준비금 등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5.7.1, 2010.11.24>

제75조(자본적립금)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감자에 따른 차익 <개정 2005.7.1>
2. 자산재평가차익 <개정 2005.7.1>
3. 합병차익 <개정 2005.7.1>
4. 그 밖의 자본잉여금 <개정 2005.7.1>

제76조(결손금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00.7.1, 2010.11.24>
② 이 조합은 결손금을 보전하고 제7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73조에 따른 지도사업비 이월금, 제74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신설 2010.11.24>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④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3항에 따른 배당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⑤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 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업이용량 기준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⑥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에 조합원이 납입완료한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라 행하되,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 퍼센트를 더한 범위내로 한다. 다만, 연 평균금리에 2 퍼센트를 더한 합산액이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2010.11.24>
⑦ 제5항에 따른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7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이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② 이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제7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7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24>

제79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결손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및 서류의 사본 발급 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제7장 합병·분할 및 청산

제80조(합병) 이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제44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투표를 포함한다. 제81조에서도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제81조(분할) 이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10.11.24>

제82조(청산) ① 이 조합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개정 2005.7.1, 2010.11.24>

부 칙 <67. 8. 25 수산청고시 제10호>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출자) ①조합원이 조합설립 후 이 조합에 현물 출자할 것을 이 조합과 약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재산의 명칭
2. 수량
3. 가격
4. 출자자 성명
5. 출자자 주소
6. 출자자에 부여할 출자좌수
7. 환매특약 조건

제3조(양수재산) ①이 조합의 설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명칭
2. 수량과 가격
3.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제4조 <삭제>

부 칙 <72. 1.21 수산청고시 제3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무에 대한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상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출자금의 납입) 이 정관 시행당시 본 조합의 조합원은 1971년 8월 11일까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2. 6. 7 수산청고시 제12호>

이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11. 8 수산청고시 제20호>

이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5. 9 수산청고시 제8호>

이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4.15 수산청고시 제7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수산청장(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간부직원에 대한 조치)이 정관 시행당시의 간부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7. 4. 27 수산청고시 제9호>

이 정관은 수산청장(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11. 30 수산청고시 제26호>

이 정관은 수산청장(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 11. 14 수산청고시 제13호>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12. 24 수산청고시 제22호>

이 정관은 수산청장(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1. 18 수산청고시 제11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조합의 상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2. 6. 10 수산청고시 제8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예) 제5조제5항의 규정은 1982년 4월 1일 이후 위판실적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83. 6. 14 수산청고시 제4호>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24 수산청고시 제7호>

이 정관은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1. 13 수산청고시 제11호>

①이 정관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8조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대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그 잔여임기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7. 12. 7 수산청고시 제8호>

이 정관은 인천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25 수산청고시 제3호>

①이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4084호)에 의하여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실시되는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는 이 정관에 의한다.

②이 정관에 의하여 정수가 증원되는 경우의 이사 또는 대의원의 정수는 이 정관 개정 후 최초로 실시되는 이사 또는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③전무 및 상무의 임면에 관한 제60조 제4항의 규정은 이와 관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④이 조합의 조합장의 선거는 89년 4월 4일에 실시한다.

이 조합의 대의원의 선거는 89년 3월 13일에 실시한다.

이 조합의 이사의 선거는 89년 4월 20일에 실시한다.

이 조합의 감사의 선거는 89년 3월 30일에 실시한다.

부　칙 <90. 1.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항의 규정은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1. 11. 21>

이 정관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5>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23>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0. 4>
이 정관 제3조(구역)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2. 7>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되는 대의원의 자격은 이 정관 시행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하며, 이 정관 시행일 현재 대의원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대의원의 자격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7.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9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납입) 이 정관 시행 당시 제2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에 미달되는 조합원은 이 정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자금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회원조합 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회원조합의 전무는 중앙회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관변경)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관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2. 9>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15 해양수산부인가 제2001-5호>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2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8호>

①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1. 5. 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34호>

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0>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3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수면양식계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내수면양식계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수면양식계"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05. 7. 1.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임원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은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대의원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 그 대의원의 결격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 3호의 개정규정은 2005. 7. 1.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간부직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중인 간부직원은 이 정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6256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어촌계가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조합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어촌계에 상근직으로 종사한 기간을 당해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그 경력기간을 산정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제10조(합병조합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②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1조(출자금환급 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①개정수협법(법률 제7311호)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협법시행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출자한 납입출자금과 같은 기간내에 기존의 조합원이 증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은 다른 출자금과 구분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 26>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 해양수산부인가 제2006-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의 변경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제1항제13호의 변경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1. 22>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1호>

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21>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0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장 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합장의 비상임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임이사 등 선출에 관한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의 추천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부직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의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정관 시행 후 결원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

제8조(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의원과 이 정관 시행이후 2년 이내에 선출되는 대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4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18호는 재임중인 대의원과 이 정관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선출되는 대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09. 09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5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제10838호)이 공포된 날('11.7.14)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04. 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4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1조 제3호는 대의원회의결일(2012.11.2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 제3호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개정일 이후 최초로시행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1년 3월 21부터「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3. 05. 0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의원회 의결일:2014.11.28)

부 칙 <2014. 06. 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의원회 의결일:2014.11.28)

제2조(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2481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05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1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의원회 의결일:2014.11.28)

부 칙 <2015. 8. 4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1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의원회 의결일:2015.9.3)

부　칙 <2016. 12. 12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의원회 의결일(2017.03.08)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조합원 가입 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table>
<tr><td rowspan="6">성명 등</td><td>성 명</td><td>(한글) : (한자)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거 소</td><td></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td></tr>
<tr><td>연락처</td><td>(집전화) : (핸드폰) :</td></tr>
<tr><td>인수 출자좌수
및 금액</td><td colspan="2">인수 출자좌수 :
출자금액 :</td></tr>
<tr><td>다른 수협
가입 유무</td><td colspan="2">있음 (가입조합명 :)
없음 ( )</td></tr>
<tr><td>어업의 종류</td><td colspan="2">면허어업 ( ), 허가어업( ), 신고어업( ), 어선원( )
기타 ( )</td></tr>
<tr><td>탈퇴 시
지분환급 등</td><td colspan="2">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 후 탈퇴 시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이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의하여 정한다.
2. 이 조합 정관 제17조에 따라 이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청 인 : (인)</td></tr>
<tr><td>사업성실이용
동의 등</td><td colspan="2">본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td></tr>
<tr><td colspan="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및 정관 제14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 (인)
※ 첨부서류 : ( ) 사본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td></tr>
</table>

(비고1) 첨부서류에는 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종사자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사항 등)를 기재한다.

(비고2) 조합원 가입신청서에는 조합 실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비고3) 법인이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은 "법인의 명칭"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로,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수정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90 호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仁川水産業協同組合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전부개정 2017. 3. 8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90호(2016.12.12)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장·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란 해당 임원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란 이 규정 제12편에 따라 설치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실질적 경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정관 제54조의2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6. "감사"라 함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7.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요령, 그 밖에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제규정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조합장을 선출한다.

제2편 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

1. 조합장 선거
   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대의원
   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이사회 구성원
2.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 :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다만,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

② 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은 법인의 임원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법인에서 선거권 행사자로 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편 피선거권

제1장 총 칙

제6조(피선거권)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상임이사 및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외부전문가 감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②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55조제1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판단
2.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는 법인에 대하여 판단
3.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4호는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판단

제7조(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

제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이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대의원·어촌계장(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조합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대의원·어촌계장,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②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후보자 등록일'을 '후보자 추천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예외)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대의원·어촌계장'을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감사·대의원·어촌계장'으로 한다.

제12조(감사 선출에 대한 예외)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대의원·어촌계장'을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감사를 제외한다)·대의원·어촌계장'으로 한다.

제4편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고 한다)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합병권고를 받은 때
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때

④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6조제7항,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5조제7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선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며, 그 외의 임원 선거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을 선거일로 한다.

제15조(선거일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선거일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외하고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편 선거인명부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번호, 조합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편 후보자

제1장 총 칙

제20조(조합장 선거의 기탁금) ①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 1,000만원의 기탁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납부받은 조합은 그 사람에게 '기탁금 납입 증명서(별표5)'를 발급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1.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기탁금 전액
4.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이중등록의 제한) 이 규정에 의하여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이 규정에 따른 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장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제22조(후보자 결정)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 구두로 추천된 사람을 후보자로 한다.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23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없을 때
2.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

③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후보자 기호 결정) ①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첨개시시각에 등록한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5조(등록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후보자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본인의 사퇴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28조(추천 후보자 결정 등) ①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당 임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9조(후보자 결정 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사실을 알린 때에는 그 추천 후보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사추천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추천인 결정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후보자 결정 통보를 받거나,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추천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후보자의 재추천 제한) 해당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선출의안이 부결된 경우 인사추천위원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람을 해당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제7편 선거운동

제33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선거운동이란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3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개시일을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방법 중 해당 선거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지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에 한정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공개된 장소에서의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제3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불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개 및 발표를 기호 순에 따라 하고, 각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37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第38條(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第39條(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第40條(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第41條(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협박·납치·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3조(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제44조(금품 등의 운반·전달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전달할 수 없다.

제45조(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제46조(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47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4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50조(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51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8편 선출방법

제1장 총칙

제52조(총회 등의 개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는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3조(총회 등의 개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퇴·사망하거나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54조(총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정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55조(대의원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6조(이사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선거

제57조(선출방법)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및 기타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 성별 또는 업종별로 배분할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수협법 제46조제8항 단서에 따라 여성조합원 중에서 비상임 이사를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때 여성조합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선출되도록 성별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선출방법은 제5장에 따른다.

제4장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58조(선출방법) ①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59조(선출방법) ①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당 임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④ 2명의 상임이사를 동시에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총회에 1개의 의안으로 부의한다.

제9편 투표 및 개표

제1장 총칙

제60조(선거의 진행) ① 제36조에 따른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61조(투·개표사무원등의 수당·실비)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 투·개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협조 받아 전자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투표

제63조(투표방법 등)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었으나,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65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 기표용구 및 기표대 등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② 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6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출하여야 할 인원 수 이내로 기표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에 기표한다.

제67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게재순서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후보자 기호 순서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제24조제1항단서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2, 3” 등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제6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9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제7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총회 개최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중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표 종료시각 전에 투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제7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③ 투표관리자는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투표관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⑦ 투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총회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⑧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제73조(투표소의 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장 및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표관리자 및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6조(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① 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封印)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각각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제77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자는 투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한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개 표

제78조(개표소 등) ①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에 별도의 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관리자로 하여금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封印)을 검사하게 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80조(개표의 진행) ①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 상황표에 의하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8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경우
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83조(개표참관) ①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중에서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선거일 전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封印)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이 「수협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⑥ 개표참관인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4조(개표관람) 누구든지 위원회가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85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개표관리자는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86條(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 또는 찬·반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第87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개표록 작성 후 지체 없이 후보자별 또는 찬·반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88條(선거관계서류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만료 시까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편 당선인

제1장 총칙

第89條(당선인 공고) 제93조,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90條(당선인 결정의 시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 전·후 당선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91條(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第92條(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제25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 및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93조(당선인의 결정)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며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대의원회 및 이사회 포함)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2.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

④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나머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94조(당선인의 결정)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이사 수 이내인 경우
2.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남은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이사 수 이내로 된 경우

제4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95조(당선인의 결정)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제11편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96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후보자 등록・결정 후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결정무효로 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5. 「수협법」 제35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협법」 제170조에 따라 선거에 따라 당선이 취소된 때
6. 「수협법」 제179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97조(보궐선거) 제96조의 경우 이외에 임원이 궐원 또는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 ①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99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12편 선거관리위원회

第10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 조합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조합원 중에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④ 후보자 및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의 임직원이 된 때
3. 조합원인 선거관리위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때.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며,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결원된 선거관리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
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4.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
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시행
6.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7. 투표 및 개표(혼합개표를 포함한다)관리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9.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10. 당선인 결정
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 직원 중에서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이외에도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선거인 등이 제7편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3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조합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시설·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편 보 칙

제104조(선거관리지침 등) 임원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선거관리경비) ① 조합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선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선거일공고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급금으로 선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선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제10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이 조합은 「수협법」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조합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포상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기구(이하 '결정기구'라고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결정기구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2016.12.1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2016.12.12)로부터 시행한다.(대의원회 의결일 2017.03.08)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아직 선거일에 도래하지 않은 선거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후보자등록신청 구비서류(제23조제3항 관련)

구 비 서 류	작성 또는 발급자	비 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본인 작성	소정양식
2. 이력서 1부	본인 작성	소정양식
3. 조합원 원장 사본 1부	소속 조합장	소정양식
4. 비경업사실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소정양식
5.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소정양식
6. 사업이용실적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소정양식
7. 기탁금 납입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소정양식
8. 후보자 서약서 1부	본인 작성	소정양식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소정양식

(주1) 신용사업을 행하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1부″를 ″5.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및 신용정보조회 각 1부″로, 작성 또는 발급자란의 ″소속 조합장″은 ″소속 조합장 및 다른 수협조합장″으로 수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35조제3항 관련)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8항제1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전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2) 선전벽보 게재사항: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전벽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조합원 50명 내지 100명당 1매의 비율로 부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벽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가 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2. 선거공보의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8항제2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나.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하여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후보자가 가목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선거공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라. 선거공보 전산원고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이 부담한다.

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 및 기간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8조의2에 따른 장소에서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53조제8항제4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 2일전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방법

1)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서 시각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법 제53조제8항제5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3) 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5) 1) 및 2)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나.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에서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1)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에게 1)의 삭제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세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별표3]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금액 범위

(제49조제2항 관련)

관련 조항	구 분	통상적인 범위
제17조의2제2항 제2호나목	○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하는 축의·부의금품	○ 5만원 이내
제17조의2제2항 제2호다목	○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 3만원 이내
	○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 1만원 이내
제17조의2제2항 제2호라목	○ 연말·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 3만원 이내

[별표4]

투 표 용 지 (후보자 선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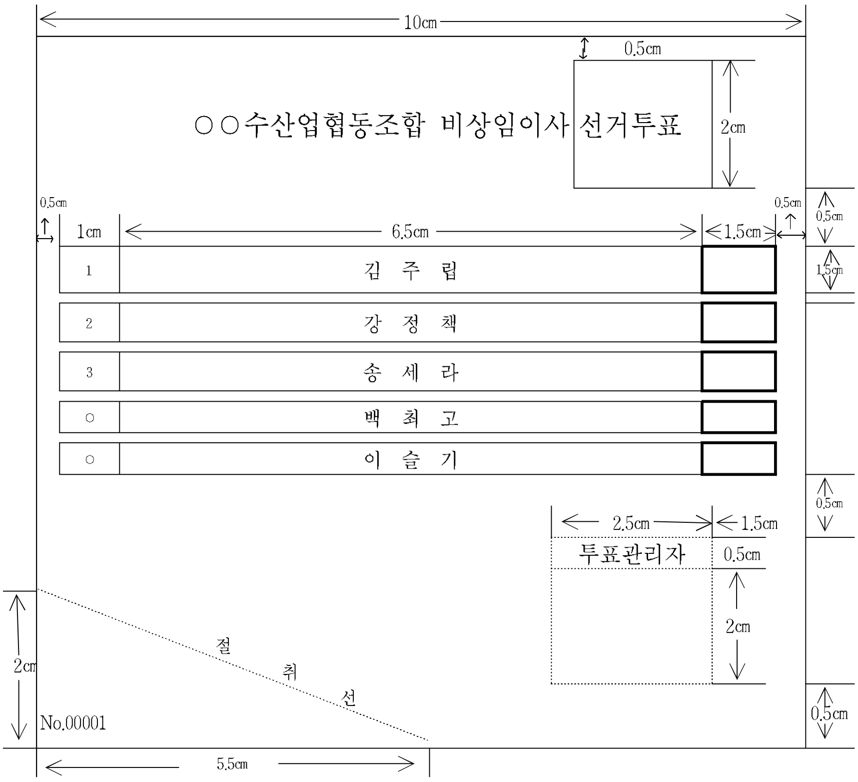

투 표 용 지 (찬·반 선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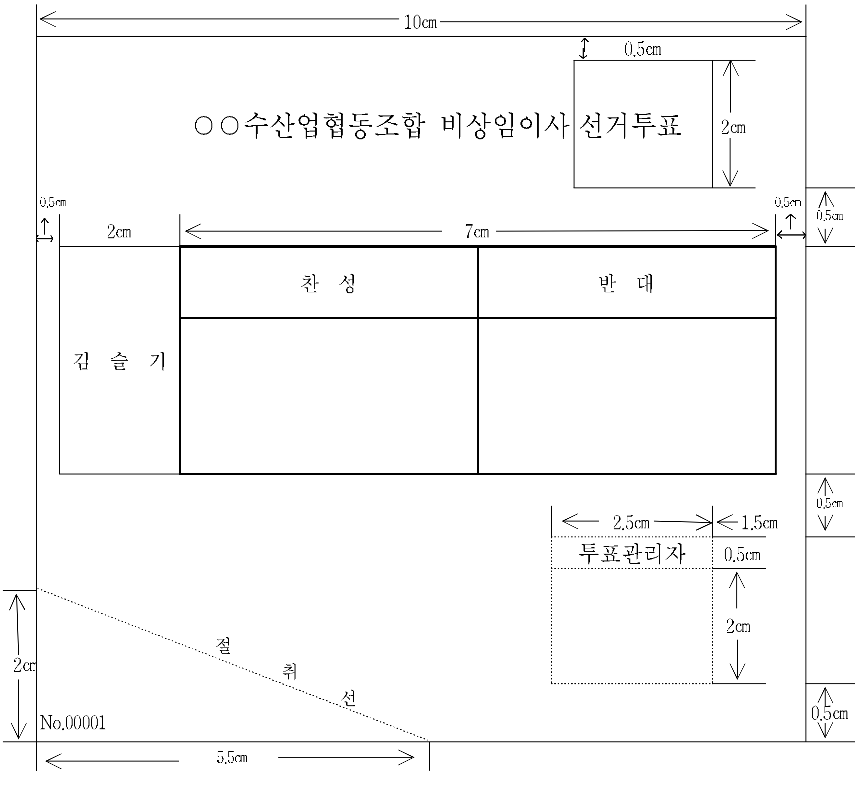

주 : 1. 투표용지의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 기표칸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

2.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와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 투표관리자란에는 투표관리자의 사인(개인도장)을 날인한다.

4. 직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시 각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여백은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시 선거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7. 별표 투표용지의 후보자는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후보자를 기재한다.

[별표5]

기탁금 납부 증명서

1. 후보자 성명 :
2. 생 년 월 일 :
3. 기 탁 금 액 : 일금 원 정 (₩)
4. 납 부 일 자 : . . .
5. 납 부 방 법 :

위 후보자는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회 조합장선거에 후보등록을 위하여 위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